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108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

나. 제 출 일 : 2023. 8. 21.

다. 회 부 일 : 2023. 10. 6.

2. 제출이유

마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2) 추진필요성

-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1)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

-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교육, 홍보, 상담 등)
- 치매 조기검진 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 대상자 등록·관리 사업(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공공후견인 지원 등)
- 치매 가족지원 사업(가족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
- 지역자원 강화 사업(협의체 운영,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등)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설현황 : 검진실, 프로그램실, 치매환자 쉼터, 가족카페, 사무실 등

2) 규　　모 : 1,236㎡(374평)

3) 위　　치 : 마포구 대흥로 24길50, 3층(염리종합사회복지관)

마. 민간위탁기간: 3년 (2024.01.0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1,556,616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48,000	- 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103,960	-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4,656	-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심판청구 비용 등
합 계	1,556,61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포구 치매관리사업의 민간위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치매는 의학적 치료의 한계성뿐만 아니라 기억・언어・행동장애 등 그 증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질병임.

○ 이에「치매관리법」제17조에서는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마포구는 센터를 2007년 7월20일 현 마포동행센터(대흥로122) 위치에 개소하고 ‘서울성모병원’과 최초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1년 9월 28일 염리종합사회복지관(대흥로 24길 50)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등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위탁 재계약하였음.

○ 본 사업은 효율적인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학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치매지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 중인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2023년 7월 부서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현 위탁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동일한 위탁기관의 반복적 계약은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의 개발 및 홍보 등 발전에 소홀하게 되는 비효율성 발생을 간과될 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타 민간운영시설과의 비교 평가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보건소 직영운영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문제점 등은 없는지 검토하고 추진계획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관 계 법 령]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